

Korean edition
l'édition korean

뉴브런스윅 이민자들을 위한 가정법률

Family Law Matters For Immigrants in New Brunswick

Droit de la famille à l'intention des immigrants au Nouveau-Brunsw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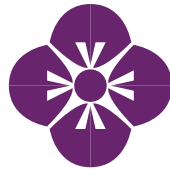
www.familylawnb.ca

별거 | 이혼 | 부부공동재산 | 양육권 | 면접교섭권 | 부양비 | 가정폭력 | 이민자 신분

Public Legal Edu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of New Brunswick (PLEIS-NB)은 비영리기관으로 뉴브런스윅 거주자들에게 평이한 언어로 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가집니다. PLEIS-NB 는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the New Brunswick Law Foundation 과 the New Brunswick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의 자금지원 및 온정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책자 개발에 필요한 프로젝트 자금지원은 Supporting Families Fund, Justice Canada 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이 책자 개발에 기여한 많은 기관들과 개인들에게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The Law Society of New Brunswick 과 the New Brunswick Legal Aid Services Commission 회원들의 콘텐츠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법과 관련한 일 처리시, 이민자들이 직면 가능한 가정법률 특수 사례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지역 이민자 관련 기관들 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로 번역에 참여 해주신 손제하, 송성미님의 큰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출판처



**Public Legal Edu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of New Brunswick**

사서함: 6000, Fredericton, NB E3B 5H1

전화번호: 506-453-5369

이메일: pleisnb@web.ca

가정법률 무료전화: 1-888-236-2444

www.legal-info-legale.nb.ca

www.familylawnb.ca

www.youthjusticenb.ca

이 소책자는 완전한 법률해석과 수시로 개정되는 법률은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Family Law
Droit de la famille NB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아랍어 버전이 가능합니다.

ISBN 978-1-4605-0421-5

2016년 3월 March 2016

목차:

- 1 소개 1
- 2 사실혼 배우자와의 별거 2
- 3 배우자와의 별거 4
- 4 이혼 6
- 5 부부공동재산과 부채 8
- 6 배우자 부양 10
- 7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12
- 8 자녀양육비 14
- 9 가정폭력 16
- 10 이민자신분 18

1 소개

뉴브런스윅에 정착하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결혼한 부부와 자녀들입니다. 캐나다의 약 40%의 결혼은 이혼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민자의 가정도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내리막길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별거와 이혼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만약 관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빈곤이나 실업, 문맹과 같은 장애요소들이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및 선택권을 이해하고 추후 조치를 취하는 데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각 주제에 실린 주황색 글 상자에 나와있는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자의 목적은 뉴브런스윅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가정 정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가정법률 문제를 설명하며 또한 이민자의 신분과 가정폭력에 관한 부분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자는 다양하고 정확한 법률정보와 우리 기관의 상세한 책자인 **"Family Law and Immigrants"** 를 소개합니다. 또한 지역 기관이나 이민자 지원 그룹들이 제공하는 많은 가정법률 및 지원서비스 링크를 제공합니다. 각 주제별 오른쪽 하단에 실린 유용한 자료출처는 영어와 프랑스어만 지원됩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이 수백의 다른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책자에 다양한 배경의 모든 예시들을 실는 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이민자들이 가진 자국의 사회 문화적인 믿음이 캐나다의 가정법률 상황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시 하는 것으로 일반화 하였습니다. 이민자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를 정형화 시키려는 의도는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2 사실혼 배우자와의 별거

어떤 문화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은 공인된 지위를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녀나 부양,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에 대해 잘못된 조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의 별거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사실혼은 단순히 동거를 그만 두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두 당사자는 동의 하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으나 결혼하지 않았다면 캐나다에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습니다.

계약서(하단의 Domestic Contracts 참고)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여느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 또한 자녀 부양의 동등한 의무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부부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결혼한 부부와 같은 자동적인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정에 재산분할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가 함께 산 시간이 충분히 길다면, 사실혼 상대자의 캐나다연금, 노령연금 및 주 연금의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지위의 사실혼 당사자는 3년 이상의 동거기간이나, 1년 동거기간과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부양을 요청 할 수 있고 별거 1년 이내에 법정에 신청해야 합니다.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캐나다 이민국)은 두 사람이 1년의 동거기간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자료출처

Family Law NB 웹사이트에서 사실혼 관계에 대한 다음의 자료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www.familylawnb.ca:

-  *Living Common-Law: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When Couples Separate –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Domestic Contracts*

-  *Custody and Access*
-  *Child Support*
-  *Spousal Support*



뉴브런스윅 법률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료전화 **Family Law Information Line:**

 **1-888-236-2444**

3 배우자와의 별거



때때로 배우자를 떠난다는 것은 지역의 민족 사회를 떠나는 걸 의미 하기도 합니다.

만약 갈 곳이 없다면 배우자와의 별거는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영어나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거나 고립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이나 용서에 가치를 두는 문화적 믿음 때문에 헤어지기를 주저 하기도 합니다.

이민자들은 캐나다 법에서 볼 수 있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의 권리에 더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이별

이혼 하기 전, 최소 1년은 배우자와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별거’라고 칭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열거한 “court order (법정명령)”을 받거나 “별거 합의서” 작성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와 오랜 시간 별거상태로 지낸다면, 유언을 수정하거나 유언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하여 함께 사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합의서를 제출, 신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판사가 집행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는 전형적으로 자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부양비와 재산분할도 다루고 있습니다.




유용한 자료출처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권리 the Family Law NB의 웹사이트
www.familylawnb.ca:


 *Custody and Access*

 *Child Support*

 *Spousal Support*

 *Marital Property*

 *When Couples Separate*

 *Domestic Contracts*

New Brunswick Multicultural Council (NBMC)
www.nb-mc.ca/members 506-453-1091

The NBMC website 에는 모든 다문화 지원기관과 이민자 협력단체 및 주 전체의 이민 에이전시의 연락처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종 이런 단체 및 기관에서 정보와 정서적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4 이혼



이혼에 대한 두려움은 종교나 문화적인 가치에 뿌리를 두기도 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오직 남성만이 이혼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만약 여성이 이혼을 하면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혼한 여성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갖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피부양자 입장일 수도 있으며, 이혼이 여성의 친족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혼은 이민자의 본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비자 스폰서를 받는 중이라면, 이혼명목의 위협으로 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혼 한 사람은 자유로이 재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이혼에 관한 규정은 *Divorce Act*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중 누구나 이혼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귀책 배우자인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에 대한 책임을 밝혀도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대부분의 부부들은 1년의 별거기간으로 결혼생활이 무너졌음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전에 부부중 한 사람이 뉴브런스윅에 1년은 거주해야 뉴브런스윅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자료출처

뉴브런스윅에서 이혼하기에 대한 정보는 *Doing Your Own Divorce in New Brunswick*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 없는 이혼일 경우(가족의 법적인 문제들이 정리 된 경우) Doing Your Own Divorce in New Brunswick 의 안내에 따라 직접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www.familylawnb.ca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Service New Brunswick Office나, 법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타국이나 다른 주에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뉴브런스윅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사에게 이혼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하기 전 the *Child Support Guidelines* 에 의거한 자녀 양육비와 같은 가정법률 문제들에 배우자 모르게 이혼 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이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이혼서류를 접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배우자는 법정에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뉴브런스윅 이혼 신청양식은 다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The **courthouse**
- **Service New Brunswick (SNB)**
- Download at www.familylawnb.ca

가족의 법적인 문제들을 합의 할 수 없어 법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 법적인 조언을 받기를 권합니다.

배우자가 주어진 시간 이내에 법정에 어떠한 이의 신청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배우자 없이도 이혼신청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자동적인 이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의식이나 혼인무효는 법적인 혼인 상태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결혼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라면 캐나다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Family Legal Aid in New Brunswick은 재산분할이나 이혼은 다루지 않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양육권, 면접교섭권, 부양비는 처리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는다면 www.legallaid.nb.ca 를 확인 하십시오.

또한 **Family Advice Lawyer** 에게서 최고 두 시간의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 **1-855-266-0266**.

5 부부공동재산과 부채

결혼 전 후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에는 많은 문화적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 예로, 신부대금을 지급하는 문화에서는 아내가 이혼을 요청할 시에 남편이 귀책 배우자가 아니라면 신부대금에 대한 아내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믿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행은 캐나다의 무책 이혼 체제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부공동재산과 부채

뉴브런스윅의 *the Marital Property Act* 에는 이혼이나 별거 시에 어떻게 재산분배가 이루어지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법적인 부부가 결혼에 동등하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배우자는 별거나 이혼에 따라 동등한 재산분할의 자격을 갖습니다. 배우자는 부부공동 부채에 대해서도 동등한 책임을 갖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은 결혼 전후에 구매되거나 취득된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주거나 교통수단, 살림, 교육이나 휴양, 사회적인 목적에 소요된 비용이라면 배우자 한쪽이나 부부 소유의 공동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연금 또한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부부가 헤어질 때 분할됩니다.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산은 분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는 양자의 동의 하에 문화적 관습에 따른 재산분할에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확인이 들어간 공증형태의 가족간의 합의가 문서화된 계약서 (*domestic contracts*) 이어야 합니다.





일단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공동재산분할은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공동재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 캐나다의 법률 체계가 해외재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용한 자료출처

뉴브런스윅 부부공동재산과 부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www.familylawnb.ca 의 책자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Marital Property in New Brunswick*
-  *When Couples Separate –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Family Law and Immigrants*
-  *Domestic Contracts*

6 배우자 부양비



어떤 문화에서는 배우자부양비에 대한 자격이 이혼의 원인과 관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만약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을 시에, 아내는 배우자 부양비를 요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3년의 비자 스폰서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비자 스폰서를 제공하는 배우자는 자녀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배우자 부양비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배우자 부양비라 합니다.

배우자 부양비는 자동적인 것이 아니므로, 부양비를 요구하는 배우자는 자신이 부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배우자나 사실혼 상대자는 가능하면 일을 하거나 소득창출을 할 것으로 기대 받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는 부양비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둘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3년의 동거기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결혼 한 부부와는 달리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들은 별거 1년 이내에 부양비 지급 소송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비 지급은 Justice Canada's *Spousal Support Advisory Guidelines* 에 근거합니다. 변호사와 판사는 부양비지급이 얼마나 지속될지, 지급액은 얼마가 적절한가를 결정하는 데에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용한 자료출처

변호사나 법원이 부양비 자격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지, 또는 변호사 선임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www.familylawnb.ca 의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Spousal Support](#)
-  [You and Your Lawyer](#)
-  [Family Law and Immigrants](#)

www.justice.gc.ca 방문하여 family law 와 spousal support 을 클릭하면 Justice Canada's *Spousal Support Advisory Guidelines* (SSAG)을 보실 수 있습니다.

7 자녀양육권과 면접교섭권



어떤 문화에서는 가족이 해체되면 전통에 따라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자녀들이 어머니와 지낼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부모가 동등한 양육권을 갖는 사실을 이민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남편의 수입이 아내보다 더 많은 경우, 아내는 양육권을 빼앗길지도 몰라 전전긍긍 하기도 합니다. 이민자가 정이 붕괴를 맞으면, 배우자가 합의 없이 자녀를 본국으로 데려가는 우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부모의 자녀유괴).


자녀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뉴브런스윅에서는 부모가 이별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동등한 권한을 갖습니다. 공식적으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열거한 “court order”나 부부간의 합의서로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법은 부부가 공동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지(양육권)와 언제 다른 부모를 만나게 될 것인지(면접교섭권), 자녀들에 대한 기타 의사결정, 자녀부양 같은 사항들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유용한 자료출처


갈라서는 부모가 양육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방법들을 the [Justice Canada website](#) 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www.justice.gc.ca](#)

 [Making Plans](#)

 [Parenting Plan Tool](#)

더 많은 정보는 the Family Law Information Line 1-888-236-2444 에 전화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familylawnb.ca](#)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Custody and Access in New Brunswick](#)

 [Family Law and Immigrants](#)

양육권에는 여러 선택사항이 존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두 형태는:

단독 양육권: 한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지며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다른 한 부모는 면접 교섭권을 받습니다.

공동 양육권: 부모가 모두 자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법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자녀가 각 부나 모와 보내는 총 시간은 다양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합의하거나 또는, 중재자나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여력이 안될 시에는 [www.legalaid.nb.ca](#) 을 통해 **Family Legal Aid**에 접촉이 가능합니다.

Legal Aid in New Brunswick은 이혼이나 재산분배는 다루지 않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부양비 문제해결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별에 대한 부모의 법적, 정서적인 측면의 이해를 돕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다루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법원에서 판사에게 판단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부나 모, 또는 가족이 자녀를 숨기거나 캐나다 밖으로 데려가는 상황이 우려된다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음을 알아 두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Passport Canada에 자녀의 여권발급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혀 두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the Passport Control List에 올리도록 Passport Canada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무료전화 1-888-236-2444.

부모의 자녀유괴 방지:

Passport Canada의 무료전화 1-800-567-6868 또는 TTY 의 1-866-255-7655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 Guide for Left-Behind Parents at [www.travel.gc.ca](#)

위기에 처한 아이들 상담 시설 Foreign Affairs 의 캐나다 무료전화1-800-387-3129

8 자녀부양비



어떤 나라에서는 부모가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닌 아이들은 유산이나 부양비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있지만, 상대와 동거한 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 자녀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녀 부양비

상대와 혼인관계가 아니거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녀 양육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캐나다에는 사생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전역에 걸쳐,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얼마만큼의 부양비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the **Child Support Guidelines**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뉴브런스윅에서는 자녀가 만 19세(성인)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녀 부양비가 지급됩니다. 만약 자녀가 만19세가 넘더라도 장애 또는 질병이 있거나, 대학에 진학 중이라면 부양비 지급은 계속됩니다.

The Guidelines 은 지급 가능한 기본적인 부양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치아교정이나 어린이 집 비용과 같은 특별지출 명목에 추가 부양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브런스윅에서 자녀 부양비에 관한 모든

법정지시는 **Family Support Orders Service (FSOS)**라 불리는 집행명령으로처리됩니다.




부모는 상대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FSOS에 의거하여 집행되도록 법원에 separation agreement 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어느 부모든 법원에 부양비 지급명령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지급해야 할 자녀부양비 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용한 자료출처

연방정부 자료출처 at www.justice.gc.ca:

-  [Child Support Guidelines: Step by Step](#)
-  [Child Support Calculator](#)
(based on the province in which the payor lives)
-  [Child Support Tables \(NB\)](#)

주정부 자료출처 PLEIS-NB at www.familylawnb.ca

-  [Child Support](#)
-  [Family Support Orders Service](#)

법적 정보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Family Law Information Line:

 **1-888-236-2444**

2시간 무료상담 예약:

Family Law Advice Lawyer:

 **1-555-266-0266**

뉴브런스윅에 거주 중이라면 특정 가정법문제에 대한 법률구조 요청이 이민자 자격으로 가능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앞서 언급된 법률구조 요청은 가능합니다.

Family Legal Aid www.legalaid.nb.ca

(주의: 법률구조는 이민절차나 난민요청은 다루지 않습니다. 법률구조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문제, 사회복지문제나 기타 민사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9 가정폭력



이민자들은 용서나 수치심과 같은 문화적 가치 때문에 가정폭력 신고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이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의 주범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이민자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폰서인 남편이 폭력으로 기소가 될 경우 아내인 당사자, 또는 남편, 가족 전체가 강제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가정폭력을 밝히는 것은 가족의 명예를 실추 할 수도 있습니다.

타국에서 가족관계를 떠난다는 것은 많은 이민자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겐 무서운 선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 문제에 도움을 얻고자 지역 전문가나 사회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않은 않습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에 적용되는 많은 용어가 있습니다. 아내 학대, 배우자 학대, 아내 구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자 폭력 등으로 불리웁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상대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한 사람이 사용하는 폭력이나 학대수단에 관련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재정적, 정신적인 학대를 포함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누구나 영향을 미치지만 폭력의 주된 희생자는 여성입니다.

폭력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면 **transition house (여성의 집)**으로 피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집은 한 달 또는 그 이상을 무료로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어떤 선택권이 있는지 알아 볼 수 있으며 자녀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폭력관계를 떠난다고 해서 강제추방 당하지는 않지만, 이민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폭력배우자와의 이별이 캐나다 내에서의 이민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할 때에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용한 자료출처

뉴브런스윅에서 폭력 당하는 여성을 위한 자료를 다음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www.legal-info-legale.nb.ca:

Information for Abused Women – Dealing with the Police

Leaving Abuse – Tips for your Safety

Services for Victims of Crime

Am I a Victim of Family Violence?

Am I at Risk?

Spanking and Disciplining Children

Support Services for Abused Women 에서 뉴브런스윅에 있는 여성의 집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www.sheltersafe.ca 에서 캐나다 전역의 주에 존재하는 다른 여성의 집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료를 더 찾아 볼 수 있습니다. at www.justice.gc.ca:

Abuse is Wrong in Any Language

Available in multiple languages.

PLEIS-NB 의 웹사이트인

www.legal-info-legale.nb.ca

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을 위한 지원과 프로그램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Directory of Services for Victims of Abuse

Information for Abused Women – Survival Strategies

가정폭력에 대한 뉴브런스윅 웹사이트: www.gnb.ca/violence

10 이민 신분

캐나다 밖에서 결혼한 이민자들은 가정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캐나다 법정을 갈 수 없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민 스폰서십을 받는 배우자나 상대는 이혼이나 이별 시에 스폰서가 자신을 강제추방 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법률시스템을 경험하는 중에 맞이 할 수도 있는 어려움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민신분

이민자는 가정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법정을 이용하는 모두와 비슷한 권리를 갖습니다.

당신이 영주권자라면 배우자나 상대, 스폰서 그 누구든지 당신이 캐나다를 떠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일 약속 받은 스폰서십에 대해 스폰서가 마음을 바꾼다면, 비자국이 당신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기 전에 스폰서 당사자가 Case Processing Centre in Mississauga (CPCM-EXTCOM@cic.gc.ca) 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캐나다로 올 수 있도록 스폰하는 누구나 스폰서십 보증에 서명해야 합니다. 당신이 영주권자라면, 당신의 스폰서는 이혼이나 이별에도 3년 동안은 당신을 스폰서 해주어야 합니다.

스폰서가 당신이 캐나다를 떠나기를 바란다고 해서,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이민국)이 당신을 캐나다 밖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나 난민이라면, 단순히 배우자와 헤어진다고 해서 캐나다를 떠나도록 강요 받을 수 없습니다.

비 영주권자이거나 조건부 영주권자일 경우, 혼인관계에 발생하는 변화가 캐나다 거주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민 변호사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유용한 자료출처

캐나다 이민자들을 위한 풍부한 정보를 찾는다면,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의 웹사이트: www.cic.gc.ca/english

전화: 1-888-242-2100

뉴브런스윅에서 배우자와 헤어지거나 이혼에 관련된 이민 신분이 비자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the Family Law NB website (www.familylawnb.ca)에 나와있는 the PLEIS-NB guide를 참고 하십시오.

 [Family Law and Immigrants](#)

